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 검 토 보 고

〈한국열에너지공사 설립 등〉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56호)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정안의 개관	4
나.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입법필요성 검토	5
2. 조문별 검토	9
가. 목적(안 제1조)	9
나. 공사의 등기 및 정관 등(안 제2조, 제4조, 제8조 및 제9조) ..	11
다. 공사의 사업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13
라. 공사의 임·직원 등(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	17
마. 공사의 재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	20
바. 감독 등(안 제3조, 제15조, 제21조 및 제22조)	29
사. 부칙	32

※ 참고자료	36
1.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 현황	36
2.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자 현황	37
3. 집단에너지사업법상 한국지역난방공사 관련 조문	41
4.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외사업 관련 현황	4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홍배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30.
3. 회부연월일 : 2026. 2.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 심화와 에너지 안보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에너지 소비 구조의 효율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열에너지의 전략적 활용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산업 공정열, 데이터센터 배열, 소각열 등 대규모 미활용 열에너지 자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제고 측면에서 활용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는 공공 주체와 체계적인 정책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 집단에너지 및 개별 에너지 사업 체계는 전력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열에너지 자원의 회수·전환·저장·공급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에 한계가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전력계통의 변동성 문제 또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열에너지를 전력계통의 유연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열·전기 생산을 연계하는 새로운 공공 인프라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열에너지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에너지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전담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열에너지자원의 개발·이용·관리와 재생에너지 기반 열·전기 생산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미활용 열에너지의 자원화, 전력-열 연계 등 미래 에너지 전환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아울러 공공성이 확보된 열에너지 공급 체계를 통해 국민 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열에너지자원의 종합적 개발·이용·관리를 위한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법인격 및 조직 운영의 기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나. 공사의 자본금, 주식 발행,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을 규정하여 공공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자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열에너지 및 전기의 생산·수송·분배·공급, 재생에너지 기반 열·전기 생산, 산업 공정열·미활용 열에너지의 회수 및 자원화, 전력의 열에너지 전환 설비 운영 등 공사의 주요 사업 범위를 규정함

(안 제12조).

라. 열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수요관리·진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공사의 재무 운영을 위하여 사채 발행, 차입, 국가의 보조 및 융자, 요금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요금 산정 기준을 주무부처가 정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바. 공사의 업무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도·감독 체계를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을 준용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열에너지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에너지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열에너지 전담 공공기관인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열에너지 자원의 개발·이용·관리와 재생에너지 기반 열·전기 생산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미활용 열에너지의 자원화, 전력-열 연계 등 미래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총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개관]

조	조 제목	조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13조	조사 및 연구
제2조	법인격	제14조	대리인의 선임
제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5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4조	사무소	제16조	손익금의 처리
제5조	자본금	제17조	사채의 발행 등
제6조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18조	차입금
제7조	주식	제19조	보조금 등
제8조	정관	제20조	요금 등의 징수
제9조	등기	제21조	감독 등
제10조	임원	제22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1조	직원의 임용	제23조	「상법」의 준용
제12조	사업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3조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등
제2조	설립준비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나.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입법 필요성 검토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 에너지소비 중 열에너지가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유사한 4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열에너지는 주로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 약 75%를 의존하여 생산¹⁾되고 있으며, 전 세계 탄소의 40%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에너지 정책은 그동안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편중되어, 산업 공정열이나 건물 냉난방, 급탕, 지역 열공급 등 다양한 열 수요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열에너지 자원의 회수·전환·저장·공급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 추진 체계와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이 부재한 상황임.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²⁾가 집단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의 생산·수송·분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1) 난방열 에너지원의 경우, 가스 등 화석연료의 비중이 75%로 가장 높고, 재생에너지 12%, 그 외 바이오매스 등 13%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요 기능은 집단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산업 폐열 등 미활용 폐열의 자원화나 전력의 열에너지 변환 설비의 설치·운영, 열에너지 자원의 종합적 관리 등 열에너지 부문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열에너지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열에너지 부문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열에너지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국열에너지공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별도의 조직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열에너지공사가 열에너지의 공급, 설치, 운용 뿐만 아니라 열에너지자원의 종합적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설립되어 운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열에너지의 공급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의 목적³⁾과 상이하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짐.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열에너지 역시 “에너지”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한국열에너지공사와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관계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기존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포괄 승계하려는 제정안 부칙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한편, 한국열에너지공사가 설립된다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장에 규정된 한국지역난방공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집단에너지 사업과 열에너지 정책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전담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열에너지공사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한국열에너지공사로 전환된다면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4) 현행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기능이 한정되어 있어 국가적 열에너지 종합 개발·관리 업무 수행이 곤란하며, 집단에너지사업 외에 신재생·미활용열 활용 사업 등 국가적 열에너지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에너지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별도 설립근거법을 통한 전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⁵⁾

재정경제부는 열에너지 관련 정책업무 및 공급기능에 관한 거버넌스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기능 배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확대·신설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화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후술하는 조문별 검토를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정 의견을 제시하겠음.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안 제1조)

제정안 제1조는 한국열에너지공사의 설립 목적 및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대강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열에너지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이용 및 관리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며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은 열에너지와 관련하여,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⁶⁾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⁷⁾

안 제1조는 한국열에너지공사(이하 “열에너지공사”)의 설립 목적을 “열에너지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이용 및 관리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여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열에너지공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목적보다 포괄적인 영역인 열에너지자원과 관련된 전반의 영역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열에너지공사 목적 비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열에너지공사(안)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u>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u>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u>열에너지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이용 및 관리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며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u> 목적으로 한다.

나. 공사의 등기 및 정관 등(안 제2조, 제4조, 제8조 및 제9조)

안 제2조, 제4조, 제8조 및 제9조는 열에너지공사를 법인으로 하고, 등기, 사무소, 정관 등 공사 설립의 기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2조(법인격) 한국열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8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사채 발행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 또는 지점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사의 설립을 위한 등기(안 제9조), 사무소(안 제4조) 및 정관(안 제8조)은 공사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초로서 필요한 것이고,

안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은 현행 난방공사의 지사 또는 사업소 등을 감안한 것⁸⁾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다만, 열에너지공사를 상장사로 설립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난방공사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마찬가지로 안 제8조의 정관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⁹⁾

8)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부사장 4본부 15처(실), 19지사(사업소) 2,167명으로 운영중으로, 2025년 말 기준, 총 19개 사업장(수도권 13개, 지방 6개)에서 191만호 및 건물 3,005개소(지역난방 1,461개소 포함)에 지역난방을 공급 중임.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 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공사의 사업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안 제12조는 열에너지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난방공사의 사업 범위에 비해 열에너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공사가 열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정보의 수집, 분석,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2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열에너지 및 전기의 생산, 수송, 분배 및 공급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 2. 재생에너지(태양광, 바이오가스, 수열에너지 등을 포함한다)를 활용한 열, 전기의 생산 및 공급 3. 산업 공정열, 데이터센터 배열, 소각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의 회수 및 자원화 사업 4. 전력계통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전력의 열에너지 변환 설비 등의 설치 및 운영 5. 열에너지 공급 시설의 안전 진단, 개보수 및 인공지능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6.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수요관리 및 진단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교육 및 부대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포함한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및 연구) 공사는 열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정보의 수집, 분석,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안 제12조는 열에너지공사가 국가차원의 열에너지 전달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열에너지 및 전기의 생산, 수송, 분배 및 공급 설비의 설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열·전기의 생산 및 공급, 미활용 열에너지의 회수 및 자원화 사업 등 열에너지 전반에 걸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¹⁰⁾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안 제12조제1항에 따라 열에너지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공사의 사업 범위와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구체적으로, 안 제12조제5호의 “열에너지 공급 시설의 안전진단” 부분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조¹¹⁾에 따라 수행하는 열수송관 안전진단 업무와 일부 중복되고, 안 제12조제6호의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수요관리 및 진단사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7조¹²⁾에 따른 에너지진단 업무와 중복 소지가 있음.

10) 현행 난방공사는 주거지 및 상업지역 등에 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음.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① 사업자는 노후화된 열수송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제1항제8호**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포함하여 열에너지공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보이나,¹³⁾

제정안에 따른 열에너지공사의 사업 범위는 열에너지의 회수 및 자

-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국제협력
 2.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5.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7.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8.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10. **에너지사용기자재·에너지관련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11.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1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원화 사업, 전력의 열에너지 변환 설비 등의 설치 및 운영, 열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진단,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수요관리 및 진단사업 등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해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들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¹⁴⁾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외사업 추진 내역]

국가	사업내용	추진 시기	진행단계
우즈베크	○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 - 자라프산 지역 노후 지역난방 시설(열원) 개체 등 현대화 추진	'24.6.~	• MOU 체결 및 정 부간 협의 完 • 차관사업 선정 추진 중
우즈베크	○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사업 - 지작 지역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소 설치를 위한 투자사업	'25.12.~	• 사업 본 타당성 조 사 중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제2호**의 “재생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 제12조제4호**에 규정된 “전력의 열에너지 변환 설비 등의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은 “전력계통의 유연성 확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4) 참고로,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은 없고,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중임.

라. 공사의 임·직원 등(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

안 제10조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정원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는 사장의 업무 중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0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② 임원의 임기, 임면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직원의 임용)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험성적 2. 근무성적 3. 그 밖의 능력의 실증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안 제10조는 열에너지공사의 임원 정수를 사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난방공사(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대비 임원의 규모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열에너지공사의 사업범위가 기존의 난방공사에 비해 광범위하고 공공자금 등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에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사 정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다만, 이사의 수가 증가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이사회에 보수나 회의운영비 등 운영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규모와 기능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유사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가스공사는 정관상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를 합하여 이사의 정원을 15인 이내로 하고 있음.¹⁵⁾

한편, 안 제10조는 “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4조¹⁶⁾가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15) 다만, 한국전력공사는 정관에 정원을 1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각각 정관에 상임이사의 수를 7인 이내로, 비상임이사의 수를 8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원)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제20조(위원회) ①공기업의 이사회는 그 공기업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③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

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감사를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취지로 보여짐.

제11조와 안 제14조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6조와 제39조¹⁷⁾를 각각 이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라 특수법인의 대표자가 임명권을 행사도록 하고(안 제36조), 특수법인의 대표자가 모든 업무를 현실적으로 직접 할 수 없으므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선임 규정을 두는(안 제39조) 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6조(직원의 임용)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험성적
2. 근무성적
3. 그 밖의 능력의 실증

제3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마. 공사의 재정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사의 재원인 자본금, 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 및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손익금의 처리, 사채의 발행, 차입금, 보조금, 요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주주 1명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공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일인이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동일인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비율을 충족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 정 안

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5. 이월 이익잉여금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은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17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한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0조(요금 등의 징수) 공사는 열 또는 전기를 공급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자로부터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 산정 기준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정안은 열에너지공사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등의 출자금, 수익금, 차입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국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안 제5조는 재원의 조달방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열에너지 사업이 탈탄소화라는 정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특성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다만, 안 제5조제1항은 자본금을 “2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난방공사의 자본금 규모인 2천억원 대비 10배 증가한 금액으로, 자본금 수준의 적정성은 열에너지 관리를 위한 투자 규모¹⁸⁾와 국가 에너지 인프라를 관리하는 타 공기업의 자본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자본금 및 투자금액 비교]

구 분	한남	한전	가스공사	한수원
법정자본금	2천억원	6조원	1조원	2.5조원
투자금액('24 기준)	6.7천억원	8.8조원	1.5조원	4.9조원
자본금 대비 투자	3.4배	1.5배	1.5배	1.9배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18)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시행한 용역(미래 40년 전략 수립 목적)에서 산출한 공사의 40년간 미래사업 투자는 27.8조원으로 추정되며, 기존 한국지역난방공사 차원의 사업 뿐만 아니라 국가 열에너지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 이상의 투자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임.

한편, 안 제5조제2항의 자본금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전달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난방공사와 동일¹⁹⁾하게 일반인으로부터 주주 모집은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안 제6조는 주주 1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는 공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주주 또는 동일인의 지배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짐.²⁰⁾

다만, 현실적으로 투자 가능성이 높은 주체는 공공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인데, 동일인의 주식 소유 비율을 제한한다면 공공주체가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없으므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주체에 대해서는 주식소유 제한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²¹⁾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20) 현행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2조의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주주 1명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공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자본금 및 주주현황 ('25.12.31 기준)]

납입 자본금	주 주 구 성		
	정 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40.44%)	기 타 (25.01%)
579억원	34.55% (200억원)	- 한국전력공사 19.55% (113.2억원) - 한국에너지공단 10.53% (61.0억원) - 서울시 10.36% (60.0억원)	- 우리사주 2.83% (16.4억원) - 일반주주 22.18% (128.4억원)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출자업무를 대행하는 주간사(금융기관 등)가 주식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 대행기간 중 주식소유 제한 비율을 초과할 가능성²²⁾이 있으므로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안 제16조는 손익금에 대한 처리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정적립금 이외의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 출자부분 등에 대한 적절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21) 참고로, 2010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동일인의 주식 소유 비율을 7% 이내로 규정하면서, 부칙을 통하여 시행일 당시 그 한도를 초과하여 공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함에 따라,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주 중 일부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비율의 7%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임.

「집단에너지사업법」(법률 제9933호, 2010.1.18.) 부 칙

②(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공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상증자 시 실권주가 발생하면 출자업무 대행사(금융기관 등 주간사)가 총액인수하여 일정기간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 기간중 주식소유 제한비율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자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 중 주식소유 비율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여 원활하게 증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손익금 처리순서와 관련하여, 열에너지공사와 달리 한국전력공사²³⁾ 및 한국가스공사²⁴⁾ 등 타 상장 공기업의 경우 배당금 지급이 사업확장적립금에 비해 우선하고 있으므로, 사업확장을 위한 자본투자와 적절한 배당을 통한 건전성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순서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²⁵⁾

[유사 공기업의 손익금 처리순서 비교]

한국열에너지공사(안)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1. 이월손실금 보전	1. ~3. (생략)	1. ~3. (생략)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u>사업확장적립금</u>	4. <u>이익의 배당</u>	4. <u>주주에 대한 배당</u>
4. <u>주주에 대한 배당</u>	5. <u>사업확장적립금</u>	5. <u>사업확장적립금</u>
5. 이월 이익잉여금	6. ~7. (생략)	6. (생략)

23) 「한국가스공사법」

제13조(이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고보상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5. 사업확장적립금
6. 그 밖의 임의적립금
7. 이월이익잉여금

24) 「한국전력공사법」

제14조(이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填)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5. 배당평균적립금으로 적립
6.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

2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법상의 이익금 처리 순서를 반영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타 상장 공기업의 조항을 참고하여 순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 제16조제2항과 관련하여 「상법」의 개정(2012.4.15.)으로 결손금 보전 순서와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었고, 안 제16조제3항의 경우 이익준비금에 관한 사항이 「상법」 제461조²⁶⁾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열에너지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안 제19조는 국가가 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항으로, 제정안에 규정된 열에너지 관련 신규 사업 및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안 제17조제1항은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한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난방공사는 정관('21.3.개정)에 따라 사채 발행 한도를 4배 규모로 운영²⁷⁾하고 있고, 이미 2022년부터 사채발행액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임.

26)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한국지역난방공사 정관」

제56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사장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자본금이 1조원인 한국가스공사는 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규정²⁸⁾하는 반면, 자본금이 6조원인 한국전력공사는 한도를 2배로 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6배의 범위에서 발행(2027년 12월 31일까지는 5배)할 수 있도록 규정²⁹⁾하는 등 상이하므로, 제정안 역시 공사의 자본금 수준과 신규 투자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채 발행 한도의 적정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주요 시장형 공기업 사채발행한도 배수]

사채발행한도 배수	근거	시장형 공기업
2배	모법	한국석유공사
4배	모법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정관	한국지역난방공사
5배	모법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 (한국전력) 2027.12.31.까지
한도 없음	-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수원, 중부발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8) 「한국가스공사법」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理事會)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29)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理事會)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안 제17조제3항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장 공기업의 자율경영 확립 차원에서, 사채 발행시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 없이 이사회 의사결정을 통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상장 공기업의 자율성과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안 제20조는 열에너지공사가 열 또는 전기를 공급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자로부터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도 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³⁰⁾에 근거하여 요금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 신고하고 요금을 징수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³¹⁾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1) 참고로, 유사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공급약관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서 요금 및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요금을 징수하고 있음.

바. 감독 등(안 제3조, 제15조, 제21조 및 제22조)

제정안 제3조와 제15조는 각각 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와 공사의 임직원 등의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1조는 공사의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22조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 등에 대한 보고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안 제23조는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열에너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다만, 경영지침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이나 거래 상대방의 혼돈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안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유사 입법례³²⁾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안 제15조는 공사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비밀 누설 등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침해를 예방하고 공적 업무 수행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안 제15조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달리 공사의 임직원은 사인(私人)이라는 점에서 유사 입법례³³⁾

32) 「한국가스공사법」

제20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제2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3) 「한국가스공사법」

제19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전력공사법」

를 참고하여 벌칙 등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안 제21조 및 제22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 및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 제22조에 관하여, 「상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장형 공기업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요로 보여지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23조는 공사와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상법」을 준용하도록 하되 같은 법 제292조³⁴⁾는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임과 동시에 상장 법인이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여짐.

제20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사. 부칙

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회를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함.

안 부칙 제3조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는 설립 등기를 마친 때에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난방공사의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규정함.

안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집단에너지사업법」 또는 난방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열에너지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회를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정 안

제3조(권리 및 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는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집단에너지사업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공사가 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등기부상 자본금은 공사의 자본금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 당시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주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집단에너지사업법」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회를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관 작성 및 등기 등의 법률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준비 행위에 법적 효과를 부여하려는 **안 제2조**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안 부칙 제3조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열에너지공사는 기존의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포괄승계³⁵⁾는 두 법인이 동일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만약 기존의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신설되는 열에너지공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안 부칙 제3조의 포괄승계라는 표현이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포괄승계를 대신하여 “경과조치” 방식 등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의 동일성은 유지하되 ‘사명’과 ‘근거 법률’만 변경함으로써 법인의 권리 누락 위험 방지를 도모하고, 법인격 유지를 통한 상장사 지위 연속성을 확보하며,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 부칙 제4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제정안과의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짐.

다만, 난방공사 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민간사업자³⁶⁾들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안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전체를 갈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할 때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규정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5) 포괄승계는 상속, 합병 등의 사유에 따라 승계가 이루어질 때 인정되는 것임.

36) 2024년 말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하여 지역난방사업자는 34개소, 산업단지 사업자는 46개소로 집계됨.

문 의 처
02)6788-5533

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설립목적

-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

나. 집단에너지사업 개념

- 열병합발전소 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를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

< 집단에너지 공급계통도 >



다. 집단에너지 공급 및 판매현황

- 집단에너지 공급 현황

- '25년말 기준, 19개 사업장(수도권 13개, 지방 6개)에서 191만호 및 건물 3,005개소(지역난방 1,461개소 포함)에 지역난방을 공급 중

※ 전국 지역난방 공급현황 : '24년말 기준 34개 사업자가 약 391만호 공급(집단에너지사업편람)

- 집단에너지 판매 현황

구 분	'21년 실적	'22년 실적	'23년 실적	'24년 실적	'25년 실적
난방(천Gcal)	13,989	14,944	13,643	13,370	14,130
냉방(천Gcal)	931	1,040	1,135	1,268	1,263
전력(천MWh)	12,300	12,791	12,020	12,002	15,539

참고 2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자 현황('24년말 기준)

□ (사업현황) 총 34개 사업자로 지역냉난방 28개, 병행(지역냉난방+산업단지) 6개 사업자가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를 공급 중

* (참고) 산업단지 사업자는 46개(지역냉난방 병행 사업자 6개 포함)

○ (지역냉난방) 지역냉난방은 총 3,907천세대 공급주택에 집단에너지를 공급 중이며, 이는 국내 총 주택의 19.66% 수준

구 분	'22년	'23년	'24년
사업자(개)	35	34	34
공급세대(천세대)	3,678	3,782	3,907

* 병행 사업자 6개 포함

○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총 1,051개 수용가에 공정용 증기 공급중

구 분	'22년	'23년	'24년
사업자(개)	45	45	46
수용가(개)	1,019	1,027	1,051

* 병행 사업자 6개 포함

□ (경영현황) '24년 기준 지역냉난방사업자 전체 매출은 약 10조 556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약 9,075억원 달성

○ 동 기간 산업단지 매출은 4조3,980억원, 당기순이익 1,638억원

구 분	지역냉난방		산업단지		병행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매출액	98,746	100,556	47,432	43,980	12,797	10,885
매출원가	87,656	85,366	24,126	30,004	11,548	9,590
영업이익	8,583	12,376	3,792	2,483	964	1,027
당기순이익	5,118	9,075	3,029	1,638	719	726

* (지역냉난방) 미결산사업자 및 (산업단지) 자료 미제출 사업자 제외

□ (설비현황) 집단에너지사업 생산설비는 전체(허가기준) 전기 15,492MW, 열 48,310Gcal/h이며, 공급설비 열수송관 길이는 5,745km×2열

구 분	지역냉난방		산업단지		병행	
	허가	설치	허가	설치	허가	설치
전기(MW)	11,306	8,411	3,192	2,827	994	912
열(Gcal/h)	27,252	20,799	17,747	17,596	3311	2132
열수송관(km)	4,953×2열		792×2열			

【참고 : 지역냉난방 사업자 현황('24년 말)】

순번	사업자명	공급구역	공급세대수	비 고
1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 고양 등	1,880,832	
2	서울에너지공사	노원, 목동 등	266,516	
3	부산광역시	해운대	44,919	
4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서남부 등	65,607	
5	GS파워	부천, 안양	430,234	
6	안산도시개발	시흥군자, 안산, 송산	112,981	
7	인천공항에너지	인천공항신도시	16,778	
8	위드인천에너지	인천논현2, 서창2	69,976	
9	인천종합에너지	송도국제도시	86,997	
10	나래에너지서비스	강동, 위례, 하남	151,765	
11	수완에너지	광주수완	40,922	
12	대륜발전	남양주별내, 갈매 등	155,799	
13	대구그린파워	대구혁신도시	7,936	
14	내포그린에너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22,915	
15	춘천에너지	춘천우두, 소양 등	6,684	
16	한국씨이에스	광주상무	820	
17	포스코와이드	포항	5,988	
18	청라에너지	인천청라	141,400	
19	검단컨소시엄	인천검단	37,106	
20	평택에너지엔파워	평택소사벌	49,755	
21	휴세스	봉담, 호매실 등	83,554	
22	부산도시가스	명지, 에코델타	22,530	
23	부산정관에너지	부산정관	26,669	
24	대성에너지	대구죽곡	11,435	
25	JB	천안청수,아산탕정	9,679	
26	삼천리	광명, 소하, 신촌	24,525	
27	씨엔씨티에너지	월평,만년,어은 등	24,530	
28	대성산업	신도림디큐브시티	524	
29	전북집단에너지	배산,장신지구	9,465	병행
30	DS파워	세교1,2지구	48,685	병행
31	대전열병합발전	송강,둔산,테크노지구	33,099	병행
32	무림파워텍	진주혁신도시	12,711	병행
33	석문에너지	석문산단배후	3,387	병행
34	OCI SE	새만금국가산단	-	병행

【참고 : 산업단지 사업자 현황('24년 말)】

순번	사업자명	사업장	공급수용가	비고
1	GS반월열병합발전	반월국가공업단지	201	
2	GS구미열병합발전	구미국가산업단지	52	
3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부산패션칼라산업단지	39	
4	코어엔텍	시화국가산업단지	63	
5	SK에너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7	
6	롯데케미칼	여수국가산업단지	4	
7	SGC에너지	군산지방산업단지	20	
8	에팩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2	
9	오라이온코리아	여수국가산업단지	3	
10	상공에너지	익산제2산업단지	11	
11	김천에너지서비스	김천1,2차산업단지	14	
12	보임열병합발전	여수국가산업단지	8	
13	이건에너지	인천지방산업단지	9	
14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대산석유화학단지	5	
15	고려아연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	19	
16	대재에너지	동두천지방산업단지	30	
17	LSMnM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	4	
18	천일에너지	포천염색산업단지	44	
19	보광에너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16	
20	충청에너지서비스	오창과학산업단지	9	
21	한림토건(구, 팜한농)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8	
22	태광산업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5	
23	S-OIL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2	
24	롯데정밀화학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2	
25	에너지울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4	
26	코엔텍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2	
27	국인산업&영남에너지서비스	구미국가산업단지	6	
28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염색산업단지	132	
29	한화토탈에너지스	삼성종합화학단지	3	
30	한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20	

순번	사업자명	사업장	공급수용가	비고
31	금호석유화학	여수국가산업단지	10	
32	여천NCC	여수국가산업단지	8	
33	LG화학	여수국가산업단지	3	
34	한화에너지	군산, 여수국가산업단지	25	
35	씨텍	서산대죽일반산업단지	7	
36	SK멀티유틸리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9	
37	성림에너지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21	
38	울산광역시	울산용연공업단지	2	
39	포승그린파워	아산국가산업단지	14	
40	GS포천그린에너지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등	64	
41	전북집단에너지	익산1,2산업단지	38	병행
42	DS파워	오산공업단지	47	병행
43	대전열병합발전	대전3,4산업단지	24	병행
44	무림파워텍	진주상평산업단지	9	병행
45	석문에너지	석문국가산업단지	14	병행
46	OCI SE	새만금국가산업단지	12	병행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0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제32조의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주주 1명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공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일인이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

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동일인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비율을 충족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제33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③ 임원 중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직원의 임용)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험성적
2. 근무성적
3. 그 밖의 능력의 실증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5. 이월 이익잉여금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43조(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조직과 정원의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제44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2 삭제

- (사업 목적) 국내 지역난방 시장 포화에 따른 ① 해외 신시장 개척,
② 중앙아시아 등 K-난방 진출*을 통한 에너지 외교 실현

*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지역난방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요구 급증

- (주요 사업) 과거 ODA³⁷⁾, KSP³⁸⁾ 위주의 무상원조사업 → 현재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를 대상으로 EDCF³⁹⁾, PPP⁴⁰⁾ 사업 검토·추진 중

- (우즈베크) EDCF 자라프산 등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 (가스엔진)
PPP 지작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 (몽골) KSP 울란바토르 저탄소·친환경 K-난방 로드맵 구축
- (키르기스·카작) 협력사업 모델 개발 및 재생에너지 기반 컨설팅 추진

- (중점 사항) 우즈베크 ①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 (EDCF), ② 최초의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사업, ③ 지역난방 기술·정책 컨설팅 (KSP)

37)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원조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38)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 지식기반 개발사업으로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 제언 사업

39)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개발도상국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위한 유상 원조 사업

40)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 민간의 전문성·효율성을 통해 공공재정부담을 경감하며 인프라개발 및 제공